

##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### 가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### 나. 계약기간

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단,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

### 다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,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,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
-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### 라.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(2024.01.01.~ )

(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 )

#### 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구 분     | 금 액(원) | 구 분     | 금 액(원)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30분 이상  | 16,630 | 180분 이상 | 54,320  |
| 60분 이상  | 24,120 | 210분 이상 | 60,530  |
| 90분 이상  | 32,510 | 240분 이상 | 66,770  |
| 120분 이상 | 41,380 | 300분 이상 | 99,280  |
| 150분 이상 | 48,250 | 480분 이상 | 133,540 |

#### 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

#### 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|
|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을환자(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,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)에관한고시해당자) | 9%   |

### 마. 신원 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'보호자'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(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(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)
-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
-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
-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
-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
(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
-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
-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
-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

바. 계약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. 기타

-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(보호자)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,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, 서비스제공 시간은 1일 240분, 180분, 120분, 90분,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.
-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기간, 서비스내용 및 시간, 서비스 장소,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, 급여제공범위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,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1부를 제공 한다.
-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목욕, 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등)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※ 2023년도 대비 방문요양 수가가 2.72% 인상되었음.